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006
----------	-------

발의연월일 : 2025. 8. 6.

발 의 자 : 전용기 · 민병덕 · 박용갑
문진석 · 한준호 · 전진숙
손명수 · 황운하 · 송옥주
임호선 · 양문석 · 이용선
윤종균 · 허 영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지하개발사업자는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에 지하안전평가 등의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고,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하며, 건설사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와 지하시설물관리자는 각각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그런데 지반침하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는 지하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 지반침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측정기기의 활용이 필요하므로 이에 관한 사항을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과 안전관리규정에 지반침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측정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반영

되도록 하여 공사 초기 단계부터 지반침하를 예방함으로써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지반침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측정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규정에는 지반침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측정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제5항 중 “제출시기 등”을 “제출시기, 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 등”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시행하는 지하개발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관리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안전관리규정이 수립된 지하시설물의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측정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이 안전관리규정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 시설물관리자의 안전관리) ① 지하개발사업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하개발사업자는 이를 승인하기 전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 시설물관리자의 안전관리) ① - ----- ----- ----- ----- ----- ----- ----- ----- ----- ----- ----- -----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신설>	3. <u>지반침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측정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u>
②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의 관리부실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	② ----- ----- ----- ----- -----

전점검 및 유지관리규정(이하 “안전관리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u>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u> ③·④ (생략) ⑤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의 제출시기, 안전관리규정의 수립 절차 및 방법, <u>제출시기</u>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u>제출하여야</u> <u>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u> <u>또한 같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u> <u>로 정하는 지하시설물의 안전관</u> <u>리규정에는 지반침하를 실시간</u> <u>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측정</u> <u>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u> <u>이 포함되어야 한다.</u> ③·④ (현행과 같음) ⑤ ----- ----- ----- <u>제출시기, 측정기</u> <u>기 설치 및 운영 등</u>----- -----.
---	---